#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253 제출연월일 : 2016. 7. 5. 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### 1. 개정이유

척과천 물놀이장의 명칭을 개정하고, 동천 및 척과천 야외물놀이 장내 새롭게 설치한 워터슬라이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 료를 추가 징수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물놀이장 명칭 변경 :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⇒ **다전 야외물놀이장**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제7조 제1항에 따른 별표 3의 워터슬라이드 이용료 추가 : 1일 **1인당 3,000원** 

3. 근거법규: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: 해당없음

라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 : 2016. 6. 13. ~ 2016. 7. 4.(의견 없었음)

#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단서 중 "적용한다."를 "적용하며, 워터슬라이드 이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."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전 물놀이장 명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 〈별지〉

# 【별표 1】

#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

시 설 명	소 재 지	주 요 시 설
동천 야외물놀이장	남외동 964번지	물놀이시설, 어린이풀, 성인풀
다전 야외물놀이장	다운동 311번지 일원	물놀이시설, 어린이풀, 유수풀

# 【별표 3】

#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(제7조 관련)

(기준 : 일 사용료)

입 장 료			워터슬라이드
어린이(만5~12세)	청소년(만13~18세)	성인(만19세 이상)	이용료
2,000원	4,000원	6,000원	3,000원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#### 현 행

#### 개 정 안

#### 제7조(이용료 징수 등)

- ① ~ ②(생략)
-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 면할 수 있다. 단, 이용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.
- 1. ~ 2.(생략)

#### 【별표 1】

####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

시 설 명	소 재 지	주 요 시 설	中立
동천 야외물놀이장	남외동 964번지	물놀이시설, 어린이풀, 성인풀	
최과천 야외물놀이장	다운동 311번지 일원	물놀이시설, 어린이풀, 유수풀	

#### [별표 3]

####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(제7조 관련)

어린이(만5~12세)	청소년(만13~18세)	성 인(만19세이상)	비고
2,000원	4,000원	6,000원	

#### 제7조(이용료 징수 등)

- ① ~ ②(현행과 같음)
- ③ ------

\_\_\_\_\_

------적용하며, 워터

슬라이드 이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.

1. ~ 2.(현행과 같음)

#### 【별표 1】

####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

시 설 명	소 재 지	주 요 시 설	
동천 야외물놀이장	남외동 964번지	물놀이시설, 어린이풀, 성인풀	
다전 야외물놀이장	다운동 311번지 일원	물놀이시설, 어린이풀, 유수풀	

#### [별표 3]

####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(제7조 관련) (기준: 일 사용료)

입 장 료			워터슬라이드
어린이(만5~12세)	청소년(만13~18세)	성인(만19세 이상)	이용료
2,000원	4,000원	6,000원	3,000원

#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(의안번호 1253)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6. 7. 5.(화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7. 8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7. 13.(수)

# 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김성규 행정지원국장)

○ 척과천 물놀이장의 명칭을 개정하고, 동천 및 척과천 야외물놀 이장내 새롭게 설치한 워터슬라이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「물놀이장 명칭 변경: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⇒ 다전 야외물놀이장
- 「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제7조 제1항에 따른 별표 3의 워터슬라이드 이용료 추가 : 1일 1인당 2,000원

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강기환)

- 본 개정 조례안은
  - 척과천 물놀이장 명칭 개정과 동천·척과천 야외 물놀이장내 새롭게 설치한 워터슬라이드의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##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